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안)

□ 제정 2012. 11.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수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교원 구성)

-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 ① 산업체 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산업체 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또는 건당으로 신청시에 결정하며 시간당 경우 최소 1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30만원(부가세 별도)까지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0%를, 산학협력단에 10%를 배분한다.

-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수시로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 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사항)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